

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진천군에서는 음식점 경쟁력 제고 및 매출 증대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『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』에 참여 할 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,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2026년 1월 30일(금)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1. 12.

진 천 군 수

1. 사업개요

- 가. 신청기간: 2026. 1. 13.(화) ~ 1. 30.(금) (접수처 도착 기준)
- 나. 지원대상: 진천군 관내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
- 다. 접수처: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식산업정책팀
- 라. 지원내용
 - (조리장 개선) 개방형, 바닥, 천장, 조리대(싱크대) 보수, 창문(방충망), 노후 간판 개·보수 및 LED 전등 교체, 인테리어 개선(페인트, 도배, 장판 타일 교체 등)
 - (화장실 개선) 노후 화장실 개·보수 등
 - (환기시설 개선) 환풍기, 후드, 덕트 등 환기 시설 개선(교체 및 청소)
 - (객석 개선) 입식 테이블 교체, 테이블오더기 설치, 간판교체 등
- 마. 사업량: 15개소 정도
- 바. 사업비: 45,000천원
- 사. 지원금액: 업소별 최대 3,000천원 이내(보조금 80%, 자부담 20% 이상)

2. 지원기준

가. 지원조건

- 보조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영업 유지하여야 하며, 이를 유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※ 단, 영업부진 · 천재지변 · 질병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예외
- 시설개선 대금은 사후정산(사업선정자의 자부담으로 시설개선 완료 후 보조금 지급)
- 선정 통보를 받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 불가(선정 무효 처리)
※ 단, 부득이한 상황으로 공사 지연 시, 사전 승인 후 기한 연장 가능

나. 지원 제외대상

-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 신고, 영업 신고 사항 변경(소재지 변경)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
-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으로 처분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되지 않은 업소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- 타 법령의 저촉되는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업소
※ 옥외광고물(간판) 미신고한 상태에서 간판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, 영업 신고 면적 이외의 장소에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등
- 선정 결정 통보 이전에 시설개선을 실시한 업소
- 진천군에 지방세, 세외수입 등 체납 중인 영업자
-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
- 3년 내 유사사업(간판 교체 사업, 시설개선 지원사업,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등)으로 기지원을 받은 자
-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휴업 · 폐업 중인 사업자
- 공고일 기준,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

다. 사업수행

-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(영업자) 직접 수행
- 사업내용,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받은 후 수행
- 지원사업 포기 시 사업포기서 제출(사업 포기 시 향후 사업 신청 제한)

라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을 취소함
- 진천군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최종 사업자 선정

3. 신청 및 제출서류

가. 신청 시 제출서류

〈 신청 시 제출서류 〉

① 신청서(사업계획서 및 견적서) 1부	⑥ 주민등록초본
② 사업계획서	⑦ 지방세 완납증명서
③ 견적서 원본과 비교 견적서 (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 견적서) ※ 단,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 제외함	⑧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④ 시설개선 전 현장 사진	⑨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⑤ 시설개선 동의서 (임차일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)	⑩ 임대차계약서 (임차일 경우 정당 권원 확인)

※ 사업자 공동명의 경우 전 사업자 서류 모두 제출 필요

나.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시설개선 범위 및 방법 등 대략의 내용 확정
- 자격을 갖춘 공사 업체에 구체적 내용 상담 후 견적 의뢰
- 견적금액을 토대로 계획서를 비롯한 신청서류 구비
- 견적금액에 따른 자부담 비용 선 확보
- 시설개선에 따른 건축주 동의서 작성

다. 신청방법: 신청기간 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식산업자원과 방문접수

(접수 시 신청 자격 해당 여부 확인), 방문 또는 우편(전자우편 포함)

라. 신청 및 문의처: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(☎043-539-3425)

- 방문 및 우편주소: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,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(본관 3층)
- 전자우편 주소: 902kgh27@korea.kr

4. 심사 및 통보

- 가. 심사방법: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
- 나. 심사기준: 영업기간, 영업형태 및 시설개선의 시급성 등 검토
 - ※ 유의사항: 신청업소별 상대평가이며, 시설개선의 시급성 등에 따라 높은 배점을 받게 됨.
- 다. 결정통보: 심사 후 개별 통보(예정)

5. 보조금 교부신청

- 가. 진천군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소만 제출
- 나. 제출서류: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

6. 청구 및 지급

- 가. 보조금 청구서류
 - 청구시기: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
 - 제출서류

〈 청구 시 제출서류 〉

① 보조금 청구서	⑤ 시설개선 공사대금 등 지불관련 서류
② 사업결과보고서	(1) 견적서, 납품서 원본(납품완료일 기재) (2)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(3) 사업자등록증(시공업체) (4) 공사대금 등 지급 통장 사본(계좌이체 시) (5) 기타 증빙서류(필요 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준공계, 준공검사조사- 납품계, 납품확인완료서 등
③ 시설개선 전 · 중 · 후 사진대지	
④ 통장사본 1부 (지원금 받을 통장, 대표자 명의)	

- 나. 정산검사

-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 현장 확인 후 심사
- 심사 결과 사업 부적합 시행 시 사업자에게 시정, 반환조치
- 사업 적합하게 수행 시 사업신청자 사업통장으로 보조금 지급

7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나.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,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군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름
- 다.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또는 지원 불가
 -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-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
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
 -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
 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
 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,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,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 -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,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·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 - 보조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,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 진천군수의 정지명령 위반,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